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58

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황운하·조 국·신장식

김재원 · 김준형 · 윤종오

강경숙 · 차규근 · 이해민

김용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.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.

따라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에도 상임위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상임위 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지 방안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

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1조의2 신설 등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1조의2(상임위원장의 사임) 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 - ②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 - 1.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
 - 2.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원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회나 국가에 해를 끼친 경우
 - 4. 그 밖에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③ 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

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가 가결되면 제1항 본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상임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
제45조제6항 중 "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"를 "제41조제3항 및 제4항, 제41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5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1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이 사임한 때에는 그 위원 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 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에 관한 적용례)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상임위원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언 앵	개 정 안
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~ ④	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	<u><</u> 삭 제>
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	
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	
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	
다 <u>.</u>	
<u></u> <신 설>	제41조의2(상임위원장의 사임) ①
	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
	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	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
	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	②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다음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
	<u>상의 연서로 상임위원장 사임</u>
	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
	<u>있다.</u>
	1.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
	<u> 수</u>
	 2.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원
	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

- 제45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 제45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 ~ ⑤ (생 략)
 -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50조(간사) ① ~ ③ (생 략)

-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 회나 국가에 해를 끼친 경우
- 4. 그 밖에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 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이 경우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가 가결되면 제1항 본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상임 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- ~ (5) (현행과 같음)

 - -----제41조제3항 및 제4항, 제41조의2제1항-----

제50조(간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⑤ (생략)

⑤ (현행과 같음)

리한다.